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9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3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(2022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2,996백만원에서 3,540백만원으로 544백만원 증액하였고, '기타수입' 금액이 6백만원 순증하였음.
- 예치금 회수 :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*를 통한 예치금 감액(△200백만원),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600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06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38백만원)
* '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' 사업비 신규편성
 - 기타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사업 집행잔액(6백만원)
- 나. 또한,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 및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불용액 감액 등으로 '비용자성사업비' 89백만원 감액하였음.

- 비용자성 사업비 :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(41백만원),
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비 감액(△130백만원)

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1,083백만원에서 1,722백만원으로 639백만원 증가하여 59% 변경되었음.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4,056	4,606	550	13.5
세외수입	60	66	6	10
경상적세외수입	60	60	-	-
이자수입	60	60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60	60	-	-
임시적세외수입	0	6	6	순증
기타수입	0	6	6	순증
그외수입	0	6	6	순증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3,996	4,540	544	13.6
보전수입등	2,996	3,540	544	18.1
예치금회수	2,996	3,540	544	18.1
예치금회수	2,996	3,540	544	18.1
내부거래	1,000	1,000	-	-
전입금	1,000	1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000	1,000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 (B)	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(C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차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륜 (F=E/A)
합 계	4,056	4,056	4,056	4,606	550	13.5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970	2,970	3,011	2,881	△89	△3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970	2,970	3,011	2,881	△89	△3
서울-타 시도간 스토리여 행상품 개발운영	150	150	150	150	-	-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60	360	360	360	-	-
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	1,000	1,000	1,000	-	-
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	160	160	160	30	△130	△81.2
사무관리비 (201-01)	90	90	90	25	△65	△72.2
행사운영비 (201-03)	70	70	70	5	△65	△92.8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50	250	250	250	-	-
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	65	65	65	65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85	485	485	485	-	-
동해·울진 산불지 복구지원	500	500	500	500	-	-
시설비 (401-01)	500	497	497	497	△3	△0.6
시설부대비 (401-03)	0	3	3	3	3	순증
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	0	0	41	41	41	순증
사무관리비 (201-01)	0	0	5	5	5	순증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(308-11)	0	0	36	36	36	순증
재무활동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보전지출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여유자금 예치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행정운영경비	3	3	3	3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대외협력과 대외정책팀 김근형(☎ 2133-6658)